

학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문화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대학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우리 대학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에 둔다.

제4조(모집단위 및 신입생 기준 입학정원) ① 우리 대학은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둔다.
② 전문학사과정에 두는 전공(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의한 정원 외 학생 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스 쿨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제
콘텐츠	애니메이션전공	150	3년제
	만화창작전공	150	3년제
	컴퓨터게임전공	150	3년제
에코라이프	카페&베이커리전공	60	3년제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120	3년제
	에코디자인전공	60	3년제
	식품영양전공	60	3년제
	유아교육과	96	3년제
패션	패션디자인전공	80	3년제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80	3년제
뮤지컬	뮤지컬연기전공	50	3년제
	무대미술전공	70	3년제
모바일	이동통신전공	79	2년제
	스마트폰전공	40	2년제
	모바일보안전공	40	2년제
합 계		1,285	

③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스 쿨	설 치 학 과	입학정원	학제
콘 텐 츠	애니메이션학과	30	1년제

④ 스쿨(계열)내 전공(학과) 및 세부코스를 둘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우리 대학 전문학사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1. 삭 제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으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 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 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나눈다.

다만, 수업을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1학기당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② 하계 및 동계 방학 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비상재해와 같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나 유연한 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 이라도 필요한 경우는 수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4장 입 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11조(입학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21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입학자격) ① 전문학사과정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로 한다.

제13조(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입학전형) ① 전문학사과정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1.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2. 대학수학능력시험
3. 대학별 고사
4. 면접고사
5. 실기고사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 중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성적자료
2. 대학별고사
3. 면접고사
4. 실기고사
5. 기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4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연도 모집요강에 정하는 기간동안 산업체에 근무중인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전형관리는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15조의2(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제17조(입학취소) ① 제14조(입학전형)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입학을 취소한다.

② 우리 대학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③ (삭제)

제18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 및 대학의 졸업자와 외국에서 수학한 자는 제1학년 2학기에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전공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편입학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전과) ①.②.③.④.⑤ (삭제)

제20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스쿨별(계열별) 학생정원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전공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유아교육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허가한다.

③ 폐과된 학과의 제적생은 부칙에 명기한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21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휴학 및 복학, 자퇴, 제적, 전과

제22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당 수업일수 1/4(3주)를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는 휴학 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단, 수업연한 초과자의 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할 수 있다.)

④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⑤ 정규학기의 등록을 하고도 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에 해당될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복학) ① 제22조에 의한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3주(21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수업연한이 2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2년제 학과에 입학 후 복학한 학생은 3년제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2년제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 ⑤ 복학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 1. 학기 개시 후 3주(21일)가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3.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학적을 가진자)
 - 4. 정당한 사유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5. 기타 관계규정 위반으로 총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전과) ① 교내전과, 전공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제1학년 제2학기 또는 제2학년 제1학기에 전입전공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 ② 전과는 전입전공의 당해 학년의 모집단위별 제적생수와 당초 입학 시 미충원 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전과한 자는 전출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폐과된 전공(과)의 학생의 경우 타 전공으로 전과 할 수 있다.
- ⑤ 2년제에서 3년제, 3년제에서 2년제로 전과 할 수 있다. 단, 유아교육과의 전입은 예외로 한다.
- ⑥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학기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입학과의 등록금이 전출학과와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불한다.

제6장 교과 및 수업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 전공교과, 교직교과로 구분하고, 전공의 특성에 따라 전공교과에 실험실습을 과한다.

- ②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각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③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매 학년도 교육과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학, 전과, 유급 및 재입학자 등 학적 변동된 자는 신규허가 학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다만, 대내외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 ⑤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⑥ 우리 대학의 설립취지와 교육이념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의2(기타 교육과정) ①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호와 같이 기타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자매대학 연구 및 공동교육과정
2. 해외교육기관 연수 및 교육과정
3. 해외인턴십 교육과정
4.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5. 삭 제
6. 기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과정(또는 프로그램)
7. 대학과목선이수제 교육과정

② 제1항에 의한 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인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6조(특별과정운영) ① 우리 대학에는 1년 이내의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과정은 우리 대학에 설치된 전공과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26조의2(시간제학생 등록제 운영) ① 우리 대학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학생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학생 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모집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선발방법은 출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의 성적 등으로 선발한다.

⑤ 시간제학생 등록제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20학점(학기당 1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기타 시간제학생 등록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3(학점은행제) ① 우리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3년제의 경우 12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중 우리 대학에서 48학점 (3년제의 경우 65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우리 대학에서 36학점(3년제의 경우 42학점)이상 취득한 자여야 한다.

② 기타 학점인정과정의 설치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4(전공심화과정) ① 우리 대학에는 고등교육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다.

②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5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문대학을 전년도에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근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자

로 한다. 다만,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학과의 관련학점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계열(학과) 관련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를 두며,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관리를 위해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기타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의 6(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 우리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반 수업 단위의 인원은 15명 이상으로 한다.

제26조의 7(계약학과 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에 입학(재입학 포함)할 수 있는 자는 본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 단체·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 단체·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 및 회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선발절차는 본 학칙과 제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의 8(계약학과의 정원) ① 제26조의 7에 의한 계약학과의 설치 및 입학정원은 별도 운영 계약서에 의한다.

② 제26조의 7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의9(계약학과의 등록금) ① 제26조의7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제2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의10(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는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다.

제26조의11(계약학과 학생의 퇴직 및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스쿨·전공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의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21조 ①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전문학사 학위 과정 또는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교과이수단위)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과목은 학점 당 시수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80학점(2년제 전공) 또는 120학점(3년제 전공)으로 하고, 이중 교양 이수학점은 2년제 10학점, 3년제 13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③ 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원격교육(위성, 인터넷)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가상교육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삭제>

제28조의2(계절수업)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하로 한다.

③ 계절수업 등은 제9조(수업일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④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3(실습학기제) ① (삭 제)

② 학교는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학기제 또는 인턴십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4(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①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정원 외 전형 전문대졸이상자로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 선택 과목을 5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⑤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하여 군복무중 취득한 학점을 최대 3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제28조의5(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과이수단위)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2년제 80학점(3년제 120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생은 매학기 1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0학점 이상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④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학위과정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는 80학점, 3년제 학과 졸업자는 12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⑤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28조의6(집중수업) ① 제28조의2(계절수업)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9조(수업일수)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제29조의2(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7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30조(평가시험) ① 각 교과목 총 수업일수의 1/4(3주)를 초과하여 무계출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스쿨원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전공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31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 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 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평가는 P급제로 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	100 ~ 95	4.5
A ₀	94 ~ 90	4.0
B ⁺	89 ~ 85	3.5
B ₀	84 ~ 80	3.0
C ⁺	79 ~ 75	2.5
C ₀	74 ~ 70	2.0
D ⁺	69 ~ 65	1.5
D ₀	64 ~ 60	1.0
F	59점 이하	0
P	불계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스쿨별 특성에 맞게 성적사정회를 시행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삭 제>

제32조(진급) 이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위 학년에 진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진급사정회에서 결정된 자로 한다.

제33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나 부정행위로 취득한 경우 성적을 취소한다.

제34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8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1-1호 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졸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2(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 28조의 5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년 과정수료 :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120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2. 2년 과정수료 : 전문학사과정 인정학점 80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3(명예학위 수여) 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우리 대학의 명예를 높였거나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유급) 동일학년의 1학기 및 2학기에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유급시키고 보호자 및 본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8장 학생활동

제37조(학생회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제38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업 및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교육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정당 또는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을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41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42조의 2(학생상담) 학생은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검사와 상담을 받아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의 3(언론활동 보장) 대학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언론활동을 보장하며 이를 위해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언론활동 및 보장을 위하여 언론기구를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처벌) 이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학생(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은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 9 장 규율과 상벌

제45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국가문화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제46조(포상) 총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학생
2.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학생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10장 등록금

제48조(등록금) ①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등록 시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학기 단위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로 한다.

②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등록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48조의2(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48조의3(등록금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3. 재적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1.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반환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

3.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반환

4.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반환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③ 제17조에 의해 입학이 취소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장학금수혜자에게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금 총액에서 장학금 수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②항에 의해 반환한다. 다만,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장학금 수혜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9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행실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의2(장애학생 학점등록)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장 장학금

제50조(장학금)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학생에게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이상인 학생으로서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학교 및 학과 발전에 공로한 학생
- ②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장학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무위원회가 대신한다.
- ④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의 제한을 두지 않는 장학금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의2(장애학생 지원) 총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해 장학 및 수업, 학생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51조(교수회) ① 우리 대학에 교수회를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52조의1(교무위원회) ① 우리 대학의 전문학사 과정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행정처(실)장, 스쿨원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 명의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진급, 졸업(명예졸업 포함)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장학사정 및 심의
6.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삭제

제52조의2 (대학평의위원회) ① 우리 대학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③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52조의3(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운영위원회) <삭제>

제52조의4(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삭제>

제52조의5(교원양성위원회) ① 우리 대학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은 교원양성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③ 교원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사항
2. 교원자격 관련 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운영 사항
3.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

제52조의6(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우리 대학 등록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금(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사항은 등록금 심의위원회규정에서 정한다.

제13장 직 제

제53조(교직원) ① 우리 대학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의 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② 교원의 임용 및 업적평가 등 교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54조(직제) ① 우리 대학에는 기획실, 교학처, 교육지원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각 처·실에 처·실장을 보하고, 처·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각 처·실·스쿨행정실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④ 각 스쿨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책임교수를 선임할 수 있다.

제13장의1 학과 통폐합

제54조의1(학과 통폐합) 학과의 통폐합은 대학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르며,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법인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4장 부속기관

제55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속기관을 둔다.

1. 문화정보센터
2. 전자계산소
3. 산학협력단
4. 미래원
5. 국제협력센터
6. HRD센터
7. 디자인홍보센터

8. 교목실
9. 학생서비스센터
10. 자아성장센터
11. 취업정보센터
12. 관리센터
13. 정보관
14. 만화영상도서관
15. 청강기념관
16. 만화역사박물관
17. 출판부
18. 학교기업
19. 경기게임상용화지원센터
20. 창업보육센터
21.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22. 연구소
23. 평생교육원
24. 청강갤러리
25. 청강모바일아카데미
26. 애플창작터

② <삭제>

③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의1 학교기업

제55조의1(학교기업 설치) ① 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교기업이라 한다. (별표3 참조)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대학의 교지(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③ 학교기업은 학과와 연계하여 사업종목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별표4 참조)

제55조의2(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최대 25% 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당 최소 1주(4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전공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의3(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으며 교직원의 연 보수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②항,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

제56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성희롱 예방 및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성희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제58조(적용범위) 대학 학칙을 적용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제59조(기관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상담소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60조(상담소)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②상담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상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상담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성희롱 예방교육) ①상담소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상담소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고충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소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63조(상담 및 조사) ①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상담소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6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조사결과 등의 보고 등) ①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구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6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8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69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총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장 자체평가

제70조(자체평가)

- ① 총장은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 공시정보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 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가늠할 수 있다.
- ③ 자체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학칙 제·개정절차

제71조(학칙 제·개정안의 공고, 의견제출, 심의, 공포) ① 학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상으로 한다.
- ③ 우리 대학의 교직원들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반 학칙의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포 및 시행한다.

제18장 부칙

제72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네트워크과의 재적생은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멀티미디어제작과, 컴퓨터서비스과, 표면디자인과, 식품공업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재적생으로 본다.

제2조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청강문화산업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는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그래픽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건강식품과학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미디어영어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도자디자인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공연산업계열 무대공연전공, 식품생명과학과, 비즈니스영어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 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도자디자인과, 모바일네트워크과, e-비즈니스과의 재적생을 개편된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만화창작과의 경우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적용하며,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개편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모바일네트워크과 재적생은 사이버 보안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소프트웨어과, e-비즈니스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1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컴퓨터정보과, 물류유통정보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컴퓨터게임과의 경우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적용하며, 휴학 중인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2년제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한다.

제3조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3D그래픽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애니메이션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은 고시일(2009. 10. 7) 이후에 복학한 학생에 한하며, 고시일 이전에 복학한 학생은 3년제 교육과정을 운영중임에도 2년제로 졸업하여야 한다.

제3조(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씨피스디자인과의 재적생은 패션디자인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이 학칙 시행당시 씨피스디자인과 2학년 재학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도자디자인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학과 소속으로 변경할수 있다.

③ 이 학칙 시행당시 컴퓨터정보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 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학과 소속으로 변경할수 있다.

④ 이 학칙 시행당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도자디자인학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정당한 사유로 201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른학과 소속으로 변경할수 있다.

제4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사이버보안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사이버정보보안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중국IT비즈니스과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글로벌IT비즈니스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개편 및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① 학과 개편 및 폐과로 인한 다른 학과로의 소속 변경 시 유아교육과로의 소속변경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개편 및 폐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2011학년도		2010학년도	비 고
스 쿨	모집단위	학 과	
콘텐츠	애니메이션전공	애니메이션과 디지털영상디자인과 3D그래픽과	
	만화창작전공	만화창작 만화일러스트레이션과	
	컴퓨터게임전공	컴퓨터게임과 e스포츠게임과	
에코라이프	에코스타일리스트전공	플로랄디자인과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푸드스타일리스트과	
	에코디자인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과 캐릭터산업디자인과	
	식품영양전공	식품과학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패션	패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과 써피스디자인과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뮤지컬	뮤지컬연기전공	뮤지컬과	
	무대미술전공	무대미술과	
모바일	이동통신전공	이동통신과	
	스마트폰전공	-	
	모바일보안전공	사이버정보보안과	
2011 모집정지	-	관광영어과	2013학년도까지 학과 유지
	-	물류유통정보과	
	-	글로벌IT비즈니스과	
2010 모집정지	-	도자디자인과	2012학년도까지 학과 유지
	-	컴퓨터정보과	
	-	써피스디자인과	
2009 모집정지	-	3D 그래픽과	

- ① 스쿨단위로 학과를 재편함에 따라 기존 학과는 「학과개편 현황」 내용대로 소속을 변경한다.
- ② 2011학년도에 모집을 정지하는 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로 졸업할 수 있도록 2013학년도까지 학과를 유지한다. 단, 2009학년도에 모집을 정지한 3D그래픽과 재적생의 경우 2011학년도 2학년 재학생과 2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3D그래픽과 또는 애니메이션과를 선택 할 수 있고, 1학년으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 ③ 2010학년도에 모집을 정지한 써피스디자인과 재적생의 경우 패션디자인전공 또는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재적생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을 변경한다.
- ④ 모집을 정지하는 학과의 경우 학과 유지 기간 이후에는 학생이 원하는 학과(전공)로 소속을 변경한다. 또한, 학과 유지기간 중에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희망하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유아교육과로는 교원수급 적정인원 유지 및 교직과정 이수 자격부여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소속을 변경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집단위 명칭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전공, 과) 변경 명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에코스타일리스트전공의 에코가드닝 코스 재적생은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재적생으로, 카페매니지먼트 코스 재적생은 카페&베이커리전공 재적생으로, 핸드메이드크래프트코스 재적생은 에코디자인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별표 1(전문학사 학위명칭)

종 별	해 당 전 공(과)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애니메이션전공, 만화창작전공, 컴퓨터게임전공
산업예술전문학사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에코디자인전공
외식경영전문학사	카페&베이커리전공
식품영양전문학사	식품영양전공
교육전문학사	유아교육과
패션디자인전문학사	패션디자인전공
패션스타일리스트전문학사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공연예술전문학사	뮤지컬연기전공, 무대미술전공
공업전문학사	이동통신전공, 스마트폰전공, 모바일보안전공

별표 2(학사 학위명칭)

종 별	해 당 학 과
산업예술 학사	애니메이션학과

별표 3(학교기업명칭)

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CCRC(Chungkang Creative Research Center)로 한다.
2.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쿨투라(Cultura)로 한다.

별표 4(학교기업 사업내용)

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CCRC는 콘텐츠스쿨과 연계하여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영상, 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산업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 기술 서비스’를 사업내용으로 한다.
2. 쿨투라는 에코라이프스쿨과 연계하여 ‘조리, 푸드스타일링 및 화훼’등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제 호

학 위 증 서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스쿨 - 전공 : (년제)
전공코스 :
부전공코스 :

위 사람은 본 대학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교육과학기술부 학위등록번호 : 청강 - ○○ - ○○○○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교육과학기술부 학위등록번호 : 청강 - 〇〇 - 〇〇〇〇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교육과학기술부 학위등록번호 : 청강 - (학)○○ - ○○○○

제 호

수료증서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스쿨 - 전공 : (년제)
전공코스 :
부전공코스 :

위 사람은 본 대학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제 호

수료증서

성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제 호

수료증서

성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 과 소정의

학사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별지 제3호]

고충 접수/처리대장

20 년

[illegible]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학과)	
		직급(학년)		성별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학과)	
		직급(학년)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학과)	
		직급(학년)		성별	
상 (신 내 담 청) 내 용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 표기)	성희롱의 중지		공개사과		
	징계 등 인사조치		기타		
처리 결과					
관련 자료 첨부(성희롱에 대한 정황, 사진, 녹취록, 기타 등)					

학 칙 시 행 세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학칙 시행에 따른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스쿨의 전공(과) 및 코스)

스 쿨	모 집 단 위	전 공 코 스
콘 텐 츠	애니메이션전공	애니메이션제작 만화창작 게임제작 스토리텔링 컨셉아트
	만화창작전공	
	컴퓨터게임전공	
에 코 라이 프	카페&베이커리 전공	카페매니지먼트, 베이커리매니지먼트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푸드스타일리스트, 에코퀴진, 에코가드닝
	에코디자인전공	그래픽디자인, 에코프로덕트디자인
	식품영양전공	바이오푸드, 푸드테라피
	유아교육과	생태유아교육, 생태보육
패 션	패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 무대의상디자인
	패션스타일리스트전공	패션스타일리스트, 모델
뮤 지 켈	뮤지컬연기전공	
	무대미술전공	
모 바 일	이동통신전공	
	스마트폰전공	
	모바일보안전공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학사행정 전반에 적용된다.

제2조의 2(정보보호) 학사관리를 위해 필요한 학생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입학 및 등록

제3조(입학) 입학이 허가된 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입학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제4조(재입학) ① 자퇴 및 제적된 학생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 47조(징계)에 의하여 제적 처리된 학생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하는 학생은 재입학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삭 제>

④ 재입학생은 해당학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은 납부하지 아니하며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은 학칙시행세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재입학생은 허가된 학기의 이전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조기재입학 한 학생이 기 취득한 성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성적취소원을 제출하여 해당 학기 성적일체를 취소하고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기재입학이라 함은 자퇴 및 제적된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재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⑥ 산업체위탁생이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 할 당시의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에 한한다.

제5조(편입학) ① 편입학 지원자의 성적인정은 해당전공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편입학 지원자로서 본 대학에 편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학력조회를 실시하며 조회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6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지정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② 재학생 등록은 매학기 지정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 ③,④,⑤항에서 같다)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자는 보호자 연서로 등록금납부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복학생의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 가. 등록학기 수업일수 1/2(8주)이후 휴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1/2을 납입하여야 한다.
- 나. 등록학기 수업일수 3/4(12주)이후 휴학생은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다. 등록학기 수업일수 1/2(8주)이전 휴학생은 복학시 등록금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 2.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군입대 휴학을 할 경우
 - 가. 등록학기 수업일수 3/4이후 휴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을 중간고사만으로 기말고사 성적으로 대체하며, 해당학기 성적 불인정을 원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나. 등록학기 수업일수 3/4이전 휴학생은 복학시 등록금 차액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 3.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이 일반휴학에서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군휴학으로 인정한다.
- ④ 정규학기 초과 등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청 학점이 1~3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6을 납입하여야 한다.
 - 2. 신청 학점이 4~6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3을 납입하여야 한다.
 - 3. 신청 학점이 7~9학점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의 1/2을 납입하여야 한다.
 - 4. 신청 학점이 10학점 이상일 경우는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⑤ 유급된 학생 및 수업연한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일반휴학을 하고 복학하기 전에 자퇴할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수강신청 및 강의

제7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복학생 중 교육과정 변경으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이 복학 후 학기에 개설된 경우는 중복 수강할 수 없다.
- ③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고 확인을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부탁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강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제7조의2(인접선택 수강신청) ①소속이 다른 스쿨 또는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에는 소속스쿨과 해당스쿨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한 학기에 학점에 관계없이 3과목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득이 그 이상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인접 선택 수강신청으로 인한 학급당 수강 인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인접선택 수강신청으로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이수구분을 일반선택으로 표시하며, 스쿨성적사정회의 심의에 의해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수강신청학점) 수강신청 학점은 15학점 이상 24학점 이하로 한다. 다만, 정규학기 이상 수강생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재학생과 총장의 승인을 얻은 학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성적불인정) 학교에서 정한 수강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수강신청변경) 매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개설과목의 폐강, 강의 시간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인이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재수강 신청) ① 학점 미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필수 교과목을 우선하여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유사과목을 지정 받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삭 제

② 교과목의 성적등급이 C⁺(79점)이하인 경우는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기 이수 성적과 비교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한다.

제12조(수강지도 및 처리)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를 확인한 후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강의 시간표) ① 강의시간표는 스쿨별로 작성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개강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매학기 강의시간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2(대체과목) 당해 학기 이전의 재수강 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때에는 매 학년도 교육과정개발 보고서에 대체과목을 정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해야 한다. 다만, 2011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재수강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경우 재수강 대상 과목의 동일 학년, 학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13조의3(교수요목) 매 학년도 교육과정개발보고서에 개설 교과목의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소정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학기 수업준비 일정에 맞추어 강의계획서를 전산 입력 하여야 한다.

제15조(합동강의) 학교운영 및 교육상 필요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동강의를 할 수 있다.

제 4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16조(휴학)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입대휴학,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1. 군입대 휴학생은 휴학원에 군입영 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일반 휴학생은 휴학원에 보호자 연서의 휴학사유서, 지도교수 소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수업일수 1/4(3주)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질병휴학생의 경우는 휴학원에 전문의료 기관에서 발행

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일반 휴학생이 휴학기간 중에 입영을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한다.

5. 신입생은 입학학기 중 일반휴학을 불허한다.

6. 조기복학, 재입학, 편입학, 전과의 경우는 조기복학, 재입학, 편입학, 전과가 허가 또는 승인된 당

해 학기 중 일반휴학을 불허한다.

7. <삭 제>

8. 산업체위탁생은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제19조(복학) ⑥항의 기준을 준수 할 경우에는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제17조(자퇴) ①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에 보증인 연서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퇴한 학생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제적) 삭 제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제19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매 복학 학기 개시후 3주(21일) 이내에 복학원을 스텔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한다.

② <삭 제>

③ 학기 개시 이후 또는 복학 허용마감일 이후 제대하는 복학생의 경우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휴가증서본,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 추천서 등을 제출할 경우 복학할 수 있다.

④ 조기복학 한 학생은 성적취소원을 제출하여 해당 학기 성적 일체를 취소하고 당해 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한 후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조기복학이라 함은 복학예정 학기가 아닌 직전 학기에 복학하는 것을 말한다.

⑤ <삭 제>

⑥ 산업체위탁학생이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학과가 개설되어 있을 경우에만 복학 할 수 있다.

제 5 장 교육과정 편성

제20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학문의 발전과 변천하는 산업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인접학문과 중복되지 않도록 탄력성 있게 편성한다.

② <삭 제>

③ 교육과정은 매학년도 시작 전에 스텔에서 작성하여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기개시일 1개월 전에 확정한다.

④ 특별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현장실습) ① 졸업에 필요로 하는 현장실습은 1학점 당 최소 1주(40시간) 이상으로 재학기간 중 스텔에서 정한 기간에 행하되, 가급적 방학기간 중에 실시한다.

② 실습생의 파견선발은 실습 해당 스텔원장이 주관한다.

③ 실습생과 지도책임자는 현장실습 평가서 및 현장실습 일지를 실습종료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방침에 따라 방학 중 학교에서 응용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현장실습생은 전공담당 교수에게 해당과목의 과제물 및 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 ⑤ 현장실습 중이라도 각 교과별 시험에는 응시하여야 한다.
- ⑥ 현장실습의 성적평가는 P급제로 한다. 단, 전공에 특성에 따라 점수제로 할 수 있다.
- ⑦ 현장실습생은 실습장을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실습기간 내에 자의로 중단할 수 없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어 중단할 경우는 실습지도 책임자의 공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수 업

제22조(수업) ① 수업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 ② 수강신청자가 15인 미만일 때는 이를 폐강 할 수 있다. 단, 재학 인원이 15인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폐강처리 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유아교육과의 유치원실습, (삭제), 보육실습 과목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23조(휴 · 결강) ① 담당교수가 사전 연락 없이 수업 시작 후 20분까지 출강하지 않은 교과목은 결강으로 처리한다.

- ② 결강한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결 ·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 · 사적으로 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 ·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보강) 휴 · 결강은 반드시 보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강좌별 합반 수업은 불허한다.

제24조(출석) ① 각 교과 담당교수는 교과별 출석부에 매시간 수강신청자의 출결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무계출 결석일수가 2주간을 초과하면 출석을 독려한다.

제25조(출석인정) 다음에 해당된 결석자는 증빙서류를 첨부,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	유	출 석 인 정 기 간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경우		5일 이내
징병검사		검사당일 + 2일이내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훈련기간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행사 참여기간
본인의 결혼		5일
기타 학교에서 허가한 사유		허가기간

제 7 장 성적평가 및 시험

제26조(시험) ①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교과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시험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성적은 학기말 종합성적에 반영한다.

- ② 실험실습 및 실기교과인 경우 시험을 부과하지 않고 평소의 실제성적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7조(성적평가) ① 각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평점평균으로 하되 출석, 평소성적(과제물, 부정기 시험) 및 정기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으로 하며, 다만 출석 성적은 20%이상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성적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1. 성적 취득학점
2. 총점 순위자
3. 3학점이상 과목 다 취득자
4. 위 3개 항목이 같은 경우 동점처리

제28조(과제물 부여 및 부정기 시험) 각 교과목은 학기 초 배부되는 강의계획서에 의하여 강의를 진행하며, 과목별로 과제 부여 및 부정기 시험을 실시한다.

제29조(성적의 인정) 일반 교과목의 성적이 D0 급 이상인 학생은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0조(진급인원) <삭 제>

제31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취득한 성적
2.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총 수업일수 중 1/4(3주)을 초과하여 무계출결석)
3.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5. 제4조 ⑤항, 제19조 ④항에 의하여 취소한 성적
6.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7. 중복 수강신청 하여 취득한 성적

제32조(추가시험 및 시험결시자 성적처리) ① 질병검사, 질병(전문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첨부), 상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해당 교과목 시험일시 이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참원을 스쿨원장에게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기간 중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불참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스쿨원장에게 제출하고, 스쿨원장은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통지하며, 각 과목 담당교수는 반영 비율에 의거, 성적을 처리 할 수 있다.

결 시 구 분	반영비율	성 적 반 영 방 법
· 국가에서 부과하는 의무수행으로 인한 결시 · 총장이 승인한 학교공무결시	100%	1. 중간고사 결시자 :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2. 기말고사 결시자 : 중간고사 성적을 반영비율에 의거 성적산출
· 경조사에 의한 결시	90%	
· 총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결시	80%	

제33조(성적열람 및 정정) ① 성적열람 기간 내 성적열람을 하여야 한다.

② 열람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정정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 8 장 학사경고, 유급, 진급, 수료, 졸업

제34조(학사경고) 매학기 마다 성적 평점평균이 1.0 미만인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하고,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35조(유급) ① 동일학년의 1학기과 2학기에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 시키고 보호자 및 본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② 유급된 학생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전에 이수한 성적을 인정한다.

제36조(진급) ① <삭 제>

② <삭 제>

제37조(졸업 및 수료) ① 당해학과(또는 전공)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충족된 학생으로서 졸업사정회에서 통과한 학생에게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중 교육과정상 필수 교과목(교양, 전공)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졸업 및 수료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삭 제>

③ 졸업학점이 충족된 학생이 졸업 유보를 희망할 경우 졸업사정회전까지 졸업유보 신청서를 스쿨행정실에 제출하면 1년간 졸업을 유보 할 수 있다.

제38조(수업 연한 초과 졸업) ① 졸업대상자 중 정규학기 동안의 미취득 학점이 24학점 이하인 학생으로 졸업에 충족되는 학점을 취득 가능할 경우 수업연한 초과 졸업에 해당한다.

② 취득학점이 80학점(2년제), 120학점(3년제) 이상인 학생이라도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학점을 미취득하였을 경우 수업연한 초과 졸업에 해당한다.

③ 수업연한 초과 졸업대상자의 등록금 납입은 학칙시행세칙 제 6조 4항에 의한다.

④ 수업연한 초과 졸업학년도는 전기 졸업학년도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 9 장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9조(교양) 구 교육과정을 이수했던 휴학생이 복학하였을 때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구 교과목의 교양필수 과목이 신 교육과정에 설치되지 않는 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제40조(전공필수) ① <삭 제>

② 폐강된 과목은 유사과목으로 대체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③ 동일 교과목이 학점 변경된 후 그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당해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 10 장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제41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 ①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스쿨행정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민등록번호
 4. 기 타
- ② 제1항에 의하여 정정된 사항은 학적부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제 11 장 제증명 발급

제42조(증명서의 종류) 본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학증명서 : 재학생으로 당해학기까지의 등록을 필한 학생.
2. 재적증명서 :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
3. 수료증명서 :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학생.
4. 졸업증명서 :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
5. 성적증명서 : 기 졸업 자 및 재학 당해 학기까지의 등록과 수강신청을 필한 학생.
6. 졸업예정증명서 : 제2학년 또는 제3학년(3년제 학과) 재학생으로 제1학기까지의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성적사정결과 취득학점이 56학점 또는 96학점(3년제 학과) 이상인 학생.
7. 휴학증명서 : 발급시점 휴학 중인 학생.
8. 기타 학업에 관계되는 증명서

제43조(증명서 발급대장 비치) 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관하기 위하여 증명서 발급대장을 비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칙 제6조(등록)3항의 1호에 관한 규정은 2002년 3월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집단위 명칭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① 모집단위(전공, 과) 변경 명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

스쿨명	콘텐츠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table><tr><th>전공명</th><th colspan="2">학위이름</th></tr><tr><td>애니메이션전공</td><td colspan="2" rowspan="3">문화콘텐츠전문학사</td></tr><tr><td>컴퓨터게임전공</td></tr><tr><td>만화창작전공</td></tr></table>			전공명	학위이름		애니메이션전공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컴퓨터게임전공	만화창작전공												
전공명	학위이름																						
애니메이션전공	문화콘텐츠전문학사																						
컴퓨터게임전공																							
만화창작전공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1. 학점이수: 6학기 120학점 이상 2. 전공코스 이수학점 <table><tr><th>전공</th><th>코스명</th><th>이수학점</th></tr><tr><td>애니메이션전공</td><td>애니메이션제작</td><td>60학점 이상</td></tr><tr><td>만화창작전공</td><td>만화창작</td><td>60학점 이상</td></tr><tr><td>컴퓨터게임전공</td><td>게임제작</td><td>60학점 이상</td></tr></table> 3. 스쿨 공통코스 이수학점 <table><tr><th>전공</th><th>코스명</th><th>이수학점</th></tr><tr><td>애니메이션전공</td><td rowspan="3">스토리텔링, 컨셉아트</td><td rowspan="3">5학점 이상</td></tr><tr><td>만화창작전공</td></tr><tr><td>컴퓨터게임전공</td></tr></table> 4. 교양이수: 13학점 이상 (대학교양 필수 4학점, 스쿨 교양 9학점 이상 이수)			전공	코스명	이수학점	애니메이션전공	애니메이션제작	60학점 이상	만화창작전공	만화창작	60학점 이상	컴퓨터게임전공	게임제작	60학점 이상	전공	코스명	이수학점	애니메이션전공	스토리텔링, 컨셉아트	5학점 이상	만화창작전공	컴퓨터게임전공
전공	코스명	이수학점																					
애니메이션전공	애니메이션제작	60학점 이상																					
만화창작전공	만화창작	60학점 이상																					
컴퓨터게임전공	게임제작	60학점 이상																					
전공	코스명	이수학점																					
애니메이션전공	스토리텔링, 컨셉아트	5학점 이상																					
만화창작전공																							
컴퓨터게임전공																							
코스진입시기	해당 없음																						
주/부코스 운영계획	1. 전공 코스 내 전공과목을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다른 전공 코스 및 스쿨 공통코스 전공과목 이수 학점의 제한은 없다. 2. 스쿨 내 전공변경(전과)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시작 전까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가.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운영은 「스쿨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나. 스쿨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는 스쿨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각 전공(만화창작, 애니메이션, 컴퓨터게임)별 2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다. 스쿨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선발 및 절차 2) 학생 웨이브 프로그램 학점인정																						

[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

스쿨명	에코라이프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table><tr><td>전 공 명</td><td>학 위 이 름</td></tr><tr><td>카페&베이커리전공</td><td>외식경영전문학사</td></tr><tr><td>에코디자인전공</td><td>산업예술전문학사</td></tr><tr><td>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td><td>산업예술전문학사</td></tr><tr><td>식품영양전공</td><td>식품영양전문학사</td></tr><tr><td>유아교육전공</td><td>교육전문학사</td></tr></table>		전 공 명	학 위 이 름	카페&베이커리전공	외식경영전문학사	에코디자인전공	산업예술전문학사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산업예술전문학사	식품영양전공	식품영양전문학사	유아교육전공	교육전문학사
전 공 명	학 위 이 름													
카페&베이커리전공	외식경영전문학사													
에코디자인전공	산업예술전문학사													
푸드스타일리스트전공	산업예술전문학사													
식품영양전공	식품영양전문학사													
유아교육전공	교육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1. 교양 30학점 (대학교양 필수 4학점, 스쿨 교양필수 7학점 포함) 2. 주코스 : 50학점 이상 3. 부코스 : 24학점 이상 이수시 인정													
코스진입시기	주코스 및 부코스 진입시기 : 1학년 2학기													
주/부코스 운영계획	1. 주코스의 선택은 본인의 전공내 에서만 선택한다. 2. 주코스 이수 인정 학점은 50학점이상으로 하며 학위에 주코스 학위명을 기재한다. 3. 주코스는 졸업시까지 변경할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과로 본다 (생태유아교육 코스는 유아교육전공 입학자만 가능) 4. 부코스 이수 인정 학점은 24학점이상으로 하며 학위에 부코스 이수여부를 기재한다. 5. 부코스는 전공과 상관없이 선택할수 있다. 6. 부코스를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

스쿨명	패션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 패션디자인 전공 : 패션디자인 전문학사 - 패션스타일리스트 전공 : 패션스타일리스트 전문학사 ※ 학위증에 주코스, 부코스 명기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 교양 14학점(대학교양 필수 4학점 / 스쿨 교양선택 10학점) - 주코스(전공선택 포함) 21학점 이상 / 부코스 12학점 이상 이수학점 기준 일괄 적용 (단, 모델코스는 제외 - 모델코스는 주코스 36학점/부코스 12학점이상) ※ 타 주코스 선택과목 이수시만 부코스 학점 인정
코스진입시기	- 주코스 및 부코스 진입시기 : 2학년 1학기 (단, 모델코스는 1학년 1학기)
주/부코스 운영계획	- 주코스 선택시기(2학년 1학기 / 모델 1학년 1학기) - 주코스 선택방법 → 입학시 전공내에서 선택 - 코스별 정원 → 별도로 정하지 않음 - 필수과목 개설 / 선수과목 개설하지 않음 - 부코스 운영 - 부코스 인원은 제한하지 않음 - 부코스는 전공 상관없이 개방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 위 규정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

스쿨명	뮤지컬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뮤지컬연기전공, 무대미술전공 : 공연예술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1. 학점이수: 3년제(6학기, 120학점 이상) 2. 교양이수: 총 13학점(공통 필수 4학점, 스쿨 자체 9학점) 3. 무대미술전공은 3학년 2학기에 졸업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코스진입시기	해당 없음
주/부코스 운영계획	해당 없음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 스쿨 내 전공간 전과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가능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 - 무대미술전공에 졸업시험제도를 두며, 3학년 2학기에 시행. 과목은 P/F제로 하고, 학점은 부여하지 않음

[별표 1] 스쿨별 규정 주요 내용

스쿨명	모바일스쿨
학위명칭 (스쿨별/전공별)	이동통신전공, 스마트폰전공, 모바일보안전공: 공업전문학사
졸업요건 (학점, 교양이수 조건)	모바일스쿨 교양/전공/교직 이수조건 - 모바일스쿨은 2년제로서 80학점 이상 취득시 졸업 - 전공 공통 : 교양(10학점), 전공(70학점), 교직(없음) 취득시 졸업가능 (전공 : 이동통신/모바일보안/스마트폰)
코스진입시기	해당사항 없음
주/부코스 운영계획	해당사항 없음
기타 스쿨별 중요 규정 사항	모바일스쿨 세부 운영 사항은 '모바일스쿨 운영 세칙'에 따른다.